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824호 2023. 3. 2.(목)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23-2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사항 고시 --- 1
- 사천시 고시 제2023-26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 2
- 사천시 고시 제2023-31호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위탁 고시 ----- 5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23-315호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6

회 람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824호

사천시 고시 제2023-2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사항을 고시합니다.

2023. 3. 2.

사 천 시 장

신 고 자		점용·사용 승인사항				실시계획 신고 수리사항		
주 소	성 명	승인번호 (연월일)	승인기간	위 치	면적 (㎡)	신고번호 (신고일자)	공사기간	공 사 내 역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903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2022-4 (2022.4.19.)	2022.4.19.~ 2036.12.31.	사천시 축동면 구호리 727-1번지선 일원	20,488	2023-2 (2023.02.21.)	2023.2.~ 2023.12.26.	부잔교 설치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67 (초량동)	부산지방국토 관리청장	2022-6 (2022.6.2.)	2022.6.2.~ 2051.12.31.	사천시 곤양면 검정리 산1-1번지선 ~사남면 방지리 741번지선 일원	12,910.7	2023-3 (2023.02.22.)	2023.2.~ 2027.01.31.	사천항공 산업대교 개설
		2022-7 (2022.6.2.)	2022.6.2.~ 2027.6.1.	사천시 곤양면 검정리 산1-1번지선 ~사남면 방지리 741번지선 일원	45,560.2	2023-4 (2023.02.22.)	2023.2.~ 2027.01.31.	사천항공 산업대교 개설에 따른 가축도, 가교, 오탁방지막 설치

사 천 시 공 보

제824호

사천시 고시 제2023-26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지구명	위 치	해 제 내 용			해제사유	비 고 (지정일자)
		유 형	등 급	면적(m ²)		
신향	사천시 향촌동 1285번지 일원	침수위험	나	14,600	정비사업 완료로 재해위험요인 해소	2005. 10. 07.
만마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30-2번지 일원	침수위험	나	400,000	정비사업 완료로 재해위험요인 해소	2005. 10. 07.
중촌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908-21번지 일원	해일위험	나	10,945	정비사업 완료로 재해위험요인 해소	2018. 05. 24.

붙 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도면 각1부(따로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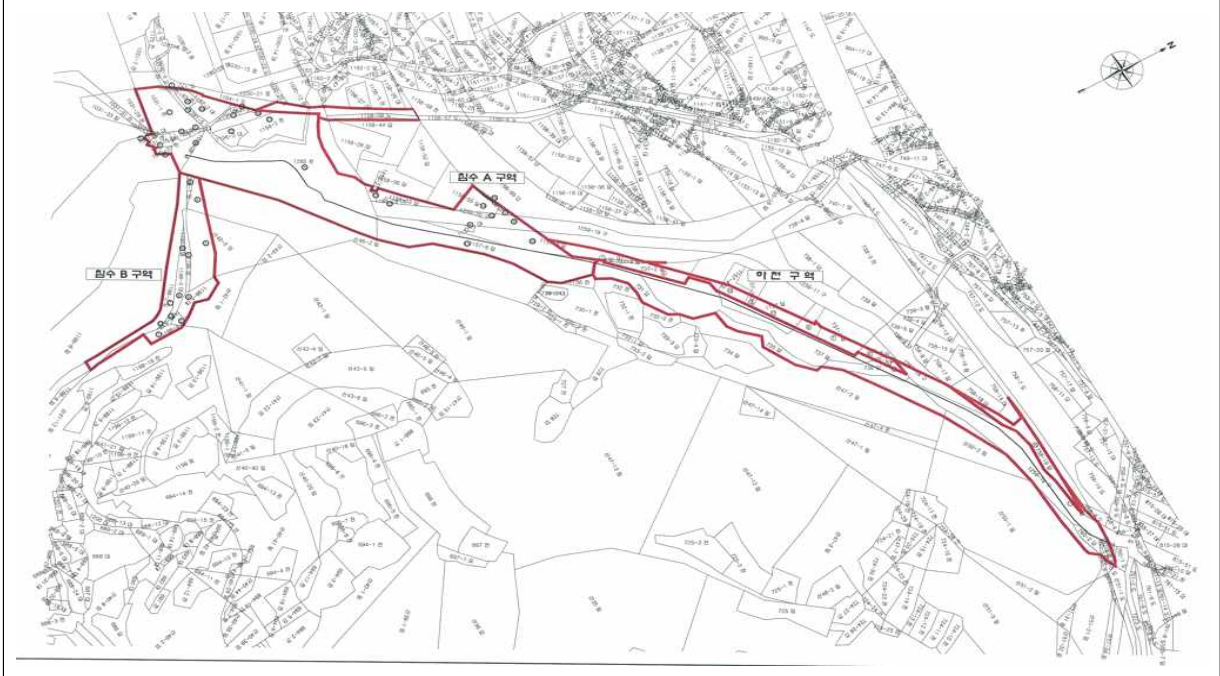
2023년 3월 2일

사 천 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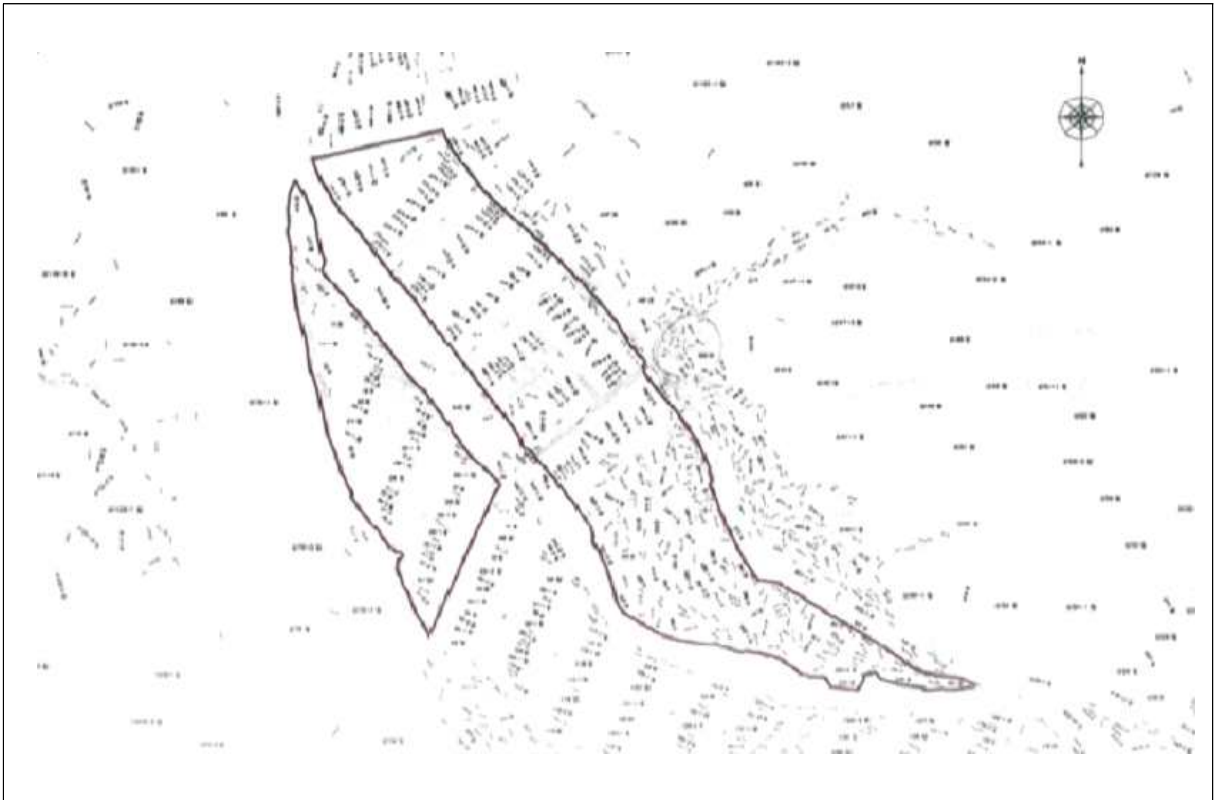
사천시공보

제824호

■ 지구 지정 해제 도면(신항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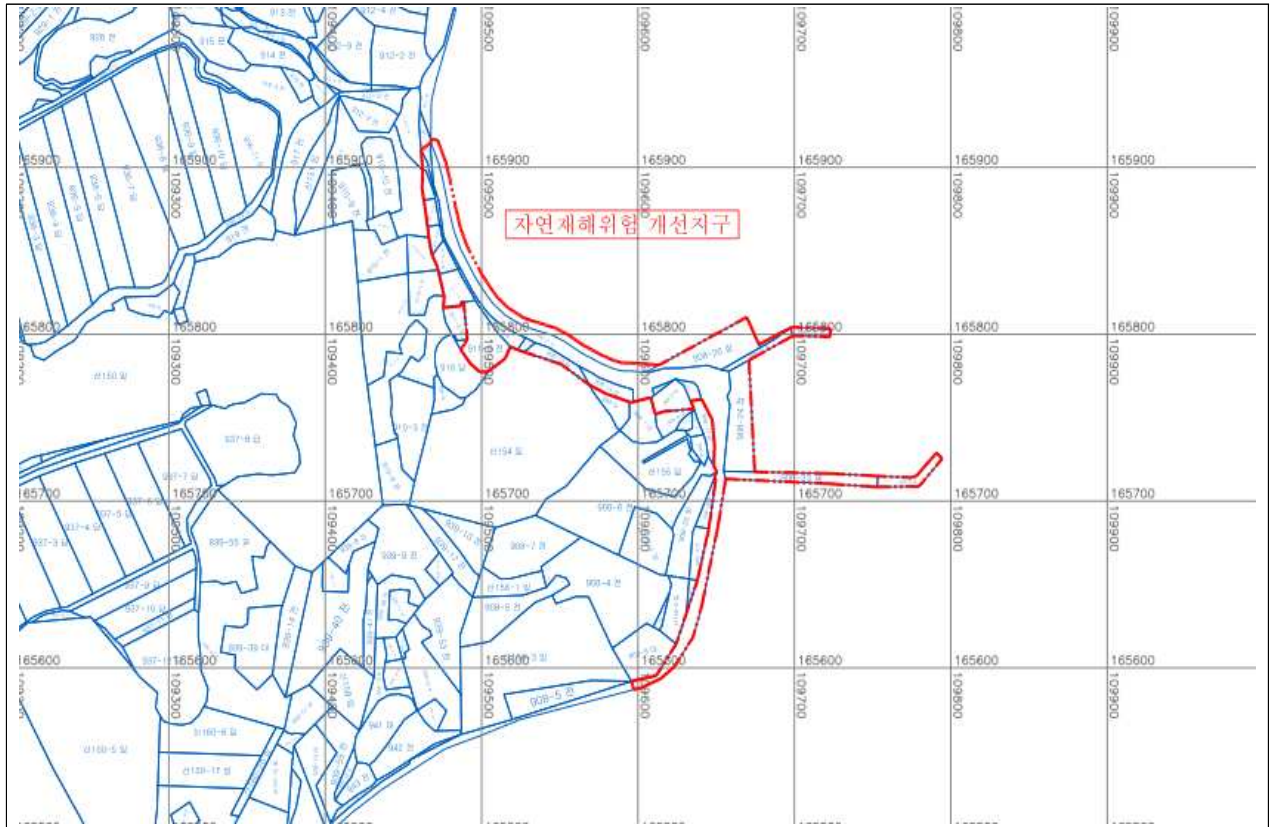
■ 지구 지정 해제 도면(만마지구)



사 천 시 공 보

제824호

▣ 지구 지정 해제 도면(중촌지구)



사 천 시 공 보

제824호

사천시 고시 제2023-31호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위탁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 사천시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2일

사 천 시 장

1. 책임수행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지역본부
2. 지적재조사지구 명칭, 사업위치 및 면적

번호	지구명	사업위치	필지수(필)	면적(m ²)
총계	9개 지구		713	251,465
1	평화1지구	사천읍 평화리 177-1 일원	38	13,686
2	이홀1지구	이홀동 220-1 일원	74	68,101
3	서동3지구	서동 138-2 일원	101	30,703
4	대곡1지구	정동면 대곡리 171 일원	39	20,611
5	송지3지구	용현면 송지리 146 일원	143	30,979
6	선인1지구	사천읍 선인리 521-1 일원	52	10,866
7	정의2지구	사천읍 정의리 183-3 일원	54	10,991
8	죽림5지구	죽림동 609 일원	57	23,766
9	늑도2지구	늑도동 35-1 일원	155	41,762

3. 위탁 업무: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4. 문의처: 사천시청 토지관리과 토지재조사팀(☎055-831-2842, 2843, 2378, 2355)

사 천 시 공 보

제824호

사천시 공고 제2023-315호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근로복지기본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천시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복합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나. 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다. 운영 및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천 시 공 보

제824호

라. 이용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바. 이용료, 이용료의 감면, 이용료의 반환,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투자유치산단과)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 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투자유치산단과)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445,

FAX: 831- 6045)

사 천 시 공 보

제824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824호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3. .

제 출 자 : 투자유치산단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근로복지기본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천시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복합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나. 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다. 운영 및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라. 이용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마.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바. 이용료, 이용료의 감면, 이용료의 반환,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제13조)

사 천 시 공 보

제824호

4. 참고사항

가. 관련 법규: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반영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3. 2. ~ 2023. 3. 22.(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24호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가.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위탁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안 제7조)

나. 비용추계의 결과

- 추계의 전제: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단지 내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운영비(인건비 포함)를 조례에 반영함에 따른 운영비 지원이 필요함.
-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세출	인건비	52,000	54,600	57,330	60,196	63,206	287,332
	운영비	24,000	25,200	26,460	27,783	29,172	132,615
	소계(a)	76,000	79,800	83,790	87,979	92,378	419,947
세입	세외수입	14,200	14,200	14,200	14,200	14,200	71,000
	의존재원	-	-	-	-	-	-
	소계(b)	14,200	14,200	14,200	14,200	14,200	71,000
총 비용(a-b)		61,800	65,600	69,590	73,779	78,178	348,947

※ 산출내역

- 인건비: 기본급 일급 최저시급(23년, 76,960원) 기준

- 기본급: 76,960원*26일(주·휴일포함)*2명*12월 = 48,023천원

- 상여금: 2,000천원*2명*1/2*2회 = 4,000천원

- 공공운영비: 사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연 운영비를 참고하여 예상 공공운영비 산출

- 물가상승율 등 지출비용 점진적 증가(5%)

다. 부대의견: 2023년 운영비 지원 예산 편성: 제2차 추경

투자유치산단과장 방 태 섭 (인)

사 천 시 공 보

제824호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합 계	76,000	79,800	83,790	87,979	92,378	419,947	
자체 수입	소 계	76,000	79,800	83,790	87,979	92,378	419,947
	지방세	61,800	65,600	69,590	73,779	78,178	348,947
	세외수입	14,200	14,200	14,200	14,200	14,200	71,0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복합문화센터 복지시설 이용료와 사용료(세외수입) 및 자체재원으로 충당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투자유치산단과장 방 태 섭 (인)

사 천 시 공 보

제824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 677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2.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문화, 주거, 편의기능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단일 또는 복합건물에 집적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이란 센터에 설치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 근로자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824호

2.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3. 그 밖에 시장이 시민과 근로자 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반 사업

제5조(시설) ①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편의시설: 근로자 공동식당, 무인 빨래방, 카페테리아
2. 문화시설: 키즈카페
3. 복지시설: 다목적실, 다목적홀, 프로젝트실, 커뮤니티실, 동아리실(중·소) 및 기타 부속시설

② 센터의 시설은 계획된 용도에 따라 이용한다. 다만,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휴관일)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일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하는 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24호

제7조(운영 및 관리위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이용 신청 및 승인)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용 승인 신청서를, 이용 승인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용 승인 변경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해야 하며, 이용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 승인서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 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필요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용 승인 절차는 이용료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료 등) ①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 승인을 취소한다.

③ 센터를 위탁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이용료를 정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24호

제11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제3호의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면제
2. 관내 입주기업 및 기업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기업 및 근로자 관련 행사: 면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0분의 50 감경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 신청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이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이용료의 반환) ①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용 승인 취소신청 및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이용 제한)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824호

제14조(대장 비치) 시장은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해야 한다.

1. 이용 승인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7호서식)
2. 이용 승인 대장(별지 제8호 서식)
3.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대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용료(제10조 관련)

구 분	기준	이 용 료			
다목적 홀	1회 이용 (2시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000원 1시간 초과 시 마다 20% 가산 평일 18:00이후, 토·일요일, 공휴일은 20% 가산 			
다목적 실					
프로젝트실	1회 이용 (2시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00원 1시간 초과 시 마다 20% 가산 평일 18:00이후, 토·일요일, 공휴일은 20% 가산 			
동아리실(중)					
커뮤니티실	1회 이용 (2시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00원 1시간 초과 시 마다 20% 가산 평일 18:00이후, 토·일요일, 공휴일은 20% 가산 			
동아리실(소)					
무인빨래방	일반코스	코스	세탁프로그램	최대시간	요금(원)
		1.쾌속	항균세탁-헥굼2회-초고속탈수	30~35분	3,000
		2.표준	항균온수세탁-헥굼3회-초고속탈수	35~40분	3,500
	프리미엄코스	3.헥굼	헥굼-초고속탈수	5~10분	1,000
		4.청정	항균온수세탁-헥굼4회-초고속탈수	40~45분	3,500
		5.이불	예비세탁-항균온수세탁-헥굼3회-초고속탈수	40~45분	3,000
		6.패딩	미온수특수세탁-헥굼3회-중속탈수	30~35분	4,000
	운동화	7.불림(삶음)	열수불림세탁-헥굼3회-초고속탈수	35~45분	4,000
		세탁	세탁-헥굼2회-탈수(1~5컬레까지 동일)	38분	2,500
		건조	1~5컬레까지 동일	5분(기본)	500
건조기			5분(기본)	500	
감 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장애인,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반의 50퍼센트 감면 감면대상 중복 시, 1개 항목만 적용 				

【별표 2】

이용료 반환기준(제12조 관련)

구분	반환금액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센터의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 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료 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일 3일 전부터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료 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일 1일 전부터 취소 (제9조제1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일 1일 전부터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공제한 금액 	

【별지 제1호서식】

이용 승인 신청서(제9조 관련)

이 용 시 설	· 기 본 시 설 : · 그 밖의 시 설 :
이 용 기 간	년 월 일 (요일), : 부터 년 월 일 (요일), : 까지(회)
이 용 목 적	
특별한 설비를 요하는 사항	
비 고(해당 시)	첨부 1. 행사(공연)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p>「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천시 복합문화센터의 시설 이용 승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신청인 성 명(단 체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법인번호) : 전 화 번 호 : 주 소 :</p> <p>사 천 시 장 귀하</p>	

【별지 제2호서식】

이용 승인 변경 신청서(제9조 관련)

변경 사유			
변경 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이용일시		
	이용시설		
	부속설비		
	기 타		
<p>년 월 일 귀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시설의 이용 승인을 받았으나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천시 복합문화센터 시설의 이용 승인 변경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신청인 성 명(단 체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법인번호) : 전 화 번 호 : 주 소 :</p> <p>사 천 시 장 귀하</p>			

【별지 제3호서식】

이용 승인서(제9조 관련)

신청인	성 명 (단체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주 소																										
이용시설																											
이용목적																											
이용 승인기간		년	월	일 (요일),	:	부터																					
		년	월	일 (요일),	:	까지																					
이용료		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이 용 시 설 명</th> <th>이 용 료</th> <th>이용료 부과내역</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d> </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이 용 시 설 명	이 용 료	이용료 부과내역	비 고																
이 용 시 설 명	이 용 료	이용료 부과내역	비 고																								
<p>「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시설의 이용을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사 천 시 장 (인)</p>																											

【별지 제4호서식】

이용 승인 불허가 통지서(제9조 관련)

신청인	성 명 (단체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주 소			
신청 내용	이 용 시 설			
	이용 신청기간	년 월 일 (요일),	:	부터 년 월 일 (요일), : 까지
불허가 사유				
<p>「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귀하의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이용 승인 신청을 위와 같은 사유로 이용 승인 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사 천 시 장 (인)</p>				

【별지 제6호서식】

이용 승인 취소신청 및 이용료 반환신청서(제12조 관련)

신청인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용 승인 시설					
이용 승인 기간					
납부한 이용료					
입금계좌		- 은행명 : - 계좌번호 :		예금주명	
취소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시설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					
첨 부	1. 은행통장 사본 1부				

【별지 제7호서식】

이용 승인 신청서 접수대장(제14조제1호 관련)

번호	접수일자	이용시설명	이용자		이용일시	이용목적	참석예상인원	특별부대설비개요	이용료	비고
			주소	성명						

【별지 제8호서식】

이용 승인대장(제14조제2호 관련)

결 재		승인 번호	승인 일시	접수 번호	이용 시설명	이용자		이용 일시	이용 목적	참석 상원 예인	특별부대 설비개요	비고
담당자	탐장					주 소	성명					

관 련 법 규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관리권자 등)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3.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
4.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제31조제2항의 입주기업체협의회
5.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① 관리권자는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관리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또는 산업단지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관리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절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
-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 사천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제2조(관리위탁)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3.12.>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개정 2020.3.12.>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개정 2020.3.12.>

②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접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재산의 관리는 제외한다.<개정 2020.3.12.>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④ 시장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3.12.>

제3조(운영)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업무를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위탁에 따른 운영비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처분 또는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물 관리) ① 수탁자는 시장이 위탁하는 재산에 대하여 신축·증축·개축 등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물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